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김교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와 빈곤이행효과를 분석하여 빈곤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 연도(1998년)와 제2차 연도(1999년)의 자료를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층의 선정은 중간소득의 1/2과 평균소득 1/3의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가구의 사적소득이전의 규모는 공적소득이전에 비해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빈곤완화효과도 공적소득이전의 효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전소득의 변화는 빈곤이행(빈곤진입과 탈출)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된 반면, 공적소득이전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급여의 증가는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자격기준과 급여기간의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율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상의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적부조 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급여수준의 향

* 본 논문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전임강사

상도 요구된다. 또한 내실있는 자활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에 기초한 소득은 가구소득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근로 가구원이 사망,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근로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가구의 반贫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개인과 친지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빈곤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이 강조되면서 빈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충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이미 빈곤에 노출된 가구의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부조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소득이전 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전되는 급여의 수준이 낮을 경우, 빈곤가구는 친지나 친척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에 기초하여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이전소득의 규모와 효과는 빈곤가구의 최저한의 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수준인가? 또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이전소득이외에 친지나 친척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것의 빈곤완화효과는 얼마나 될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구하는데 있다.

최근 들어 가구의 총소득에 대한 소득유형별 구성과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공적소득이전의 규모와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복지자를 통해 채울 수 없는 욕구는 대부분 가족과 친지에 의한 사적소득이전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인구집단(노인)을 대상(석재은, 2000, 석재은·김태완, 2000)으로 하거나, 횡단면적인 연구를 통한 분석의 한계점(손병돈, 1999)을 보이고 있으며, 종단면적인 연구들은 소득이전의 영향력보다는 빈곤

이나 실업, 그리고 빈곤이행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구인희,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박순일외, 2000; 안종범 외, 2001).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인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시장, 국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소득원 유형별 소득의 변화가 빈곤완화와 빈곤이행(빈곤진입과 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소득이전이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사적소득이전의 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소득이전과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4절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설명한다. 분석 결과의 전반부에서는 빈곤가구의 특성과 소득원 유형별 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고, 공·사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며, 후반부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이전의 빈곤이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제5절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빈곤의 실태와 변화추이, 그리고 빈곤가구나 가구주의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박찬용, 김진욱, 2001; 김미숙 외, 2000, 박순일, 2000).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소득원 유형에 따른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나 빈곤이행의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횡단적(cross-sectional)인 연구들과 종단적(longitudinal)인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횡단적인 연구들로는 사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손병돈(1999)과 노인가구의 공·사이전소득의 구성과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석재은(2000)과 석재은·김태완(2000)의 연구가 있다. 손병돈(1999)은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1996-1998)와 실업가구조사자료(1998)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적소득이전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는 공적소득이전에 비해 분명히 크지만, 그리 크지 않고 다만 국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¹⁾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그는 극빈층의 빈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석재은(2000)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에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은 매우 미약하고 가족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여성과 고령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적이전소득의 수준은 연령이 낫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은 여성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재은·김태완(2000)은 1996년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노인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빈곤화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원의 구성은 근로소득이 총소득의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이전소득의 빈곤화효과는 공적소득이전(4.2% 포인트)보다 사적소득이전(23.1% 포인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의 제공으로 이전소득의 변화와 빈곤이행 효과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해 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금재호·김승택(2001)과 구인회(2001)의 연구가 있다. 금재호·김승택(2001)은 노동패널자료(1998-2000)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빈곤이행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저학력일수록 빈곤의 위험에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가구의 주(週) 평균 근로소득과 순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 결과는 1999년과 2000년의 빈곤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된 독립변수들도 인구사회학적 변수, 주 평균 근로소득의 변화, 순자산의 변화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공·사이전소득 변수들의 영향력이 누락되어 있다. 구인회(2001)도 노동패널자료(1998-2000)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노인빈곤가구의 빈곤 지속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노인가구의 빈곤 이행에는 가구 구성원의 취업이나 실업과 같은 고용관련변수의 변화와 가구 근로소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빈곤이행에

1) 그는 다른 연구를 통해 사적소득이전의 결정요인과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손병돈, 1998ab).

는 가구원의 고용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은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1)의 연구에 의해서도 다시 확인된다. 안종범 외(2001)는 노동패널 자료(1998-2000)을 이용하여 빈곤과 실업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빈곤의 주된 원인은 가구주의 고용여부이며,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수급여부는 빈곤탈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업과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실업×사회보험수급여부 변수)이 빈곤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이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함으로써, 사회보험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역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탈피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박순일·최현수·강성호(2000)는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절대적 빈곤층(소득수준의 하위 10%)과 상대적 빈곤층(소득수준의 20-50%)의 빈곤탈피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가구원의 고용과 학력이 증가할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여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탈피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모자가구의 차상위계층으로의 상향 이동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노인가구는 절대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박찬용·김진욱·김태완(1999)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가계조사의 소득 및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수준을 계측하였는데, 그 결과 노령, 저학력, 여성 비근로자 가구일수록 빈곤선 이하에 놓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위의 연구들은 빈곤가구의 수준과 확대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며, 그로 인해 소득이전의 효과에 대한 내용들은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표 1>은 기존연구의 주요 대상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²⁾

2) 가구원의 소득원 구성과 빈곤완화 및 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들 외에 소득원 구성과 소득 분배 혹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해경·김진욱(2001), 백은광(2000), 하윤숙(1999)의 연구가 있다. 위 연구들은 모두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인데, 이해경, 김진욱(2001)은 시장소득이나 공적소득이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매우 미약한 반면 사적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백은광(2000)은 사적소득이전이 이전 전의 소득불평등도를 42.4%정도 감소시키며, 남성과 여성간 또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소득

〈표 1〉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빈곤선
구인희 (2001)	노동패널자료 (1998-2000)	가구별(노인가구, 일반가구, 여성가구) 빈곤층의 특성과 일반가구의 빈곤 이행 요인 분석	최저생계비 (1999)
김재호·김승택 (2001)	노동패널자료 (1998-2000)	빈곤가구의 정태적 결정요인과 동태적 이행의 원인 분석	중간소득의 50%
박순일 외 (2000)	도시가계조사자료 (1996-2000)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의 빈곤탈파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의 10%, 20%
박찬용 외 (1999)	도시가계조사자료 (1996-1999)	빈곤수준과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성 분석	보사연(94) 빈곤선
석재은 (2000)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 (1998)	노인소득원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규모와 역할분담 의 결정요인 분석	—
석재은·김태완 (2000)	가계소비실태조사 자료 (1996)	노인소득원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규모와 빈곤완화 효과 분석	최저생계비 (1996, 추정)
손병돈 (1999)	도시가계조사자료 (1996-1998) 실업가구조사자료 (1998)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규모 비교와 빈곤완화효과 분석	평균소득의 50% 중간소득의 50%
안종범 외 (2001)	노동패널자료 (1998-2000)	빈곤과 실업의 결정요인 분석과 사회보험 수혜여부의 빈 곤완화효과 분석	중간소득의 50%

3.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가구의 총소득을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와 빈곤이행(빈곤진입과 탈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하윤숙(1999)도 사전소득이전의 성별 소득불평등의 완화효과와 더불어 연령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빈곤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가구의 총소득을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소득원의 비중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가구의 빈곤율을 계측하고, 빈곤가구의 특성과 개별 소득원의 비중을 분석한다.

셋째, 개별 소득원을 포함한 누적소득의 단계별 빈곤율을 계측하여, 공·사소득이 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섯째, 빈곤이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진입가구와 빈곤�탈출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여섯째, 빈곤이행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득이전의 빈곤이행효과를 분석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 연도(1998년)와 제2차 연도(1999년)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에 걸쳐 그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한국노동연구원, 1999a: 1), 3) 노동패널 제1차조사(1998년)의 표본 가구수는 5,000개 사례에 이르나, 제2차 조사(1999년)에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379개 사례에 불과하다. 4) 제2차조사에는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자료로는 노동패널조사 이외에 도시가계조사가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만 조사되어 있고 자영업자나 실업자 가구,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4) 노동패널자료의 제2차조사(1999년) 자료는 1998년도 한해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사되었지만, 제1차조사(1998년도) 자료는 어느 한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들은 약간의 중첩된 기간에 대한 반복성의 한계를 가진다.

가구원이 분가한 130개 사례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나, 이를 가구는 제1차조사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은 사례들(missing)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연구의 최종 분석 사례는 두 연도 모두에 소득과 소비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응답한 총 4,356개 사례이다.

3) 소득원의 유형

일반적으로 소득원의 유형은 크게 공적소득원과 사적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적소득원은 다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뢰인과 터너(Rein & Turner, 1999)는 이러한 소득원의 영역을 근로(work)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market)을 통한 자산소득, 국가(state)를 통한 공적소득이전, 그리고 가족(family)를 통한 사적이전소득으로 정리하였다(석재은, 2000: 27에서 재인용). 한편, 아тки슨·뢰인워터·스미딩(Atkinson, Rainwater, & Smeeding, 1995)은 가구의 총소득을 근로소득(wage & salary income), 자산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primary income excluding property income),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primary income including property income), 시장소득(market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산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은 근로소득에 총사업소득을 포함한 소득이고,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은 근로소득과 총사업소득에 금융자산소득을 포함한 것이며, 시장소득은 일차소득에 직업연금이나 기타 현금소득을 포함한 것이고, 총소득은 위의 소득에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의 현금급여를 포함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김진욱, 2001: 217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와 자료의 구성에 기초하여 1998년 조사의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민간보험소득 등의 기타소득), 사회보험급여, 이전소득(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고, 1999년 자료의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사회단체보조금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소득은 모두 월

(月) 단위로 재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999년도의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가구 소득에 대한 영역을 매우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는데, 각 소득원 유형별 소득의 조작적 정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소득은 근로(일)를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된다.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이 포함된다.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급여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보험급여는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과 같은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그리고 장해연금과 같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이 포함되며, 정부보조금은 생활보호 생계비, 경로우대 교통비, 경로연금, 홍수피해 보상금, 장애인 보조 등이 포함된다. 사적이전소득은 친척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패널자료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기타소득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보조금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다시 민간 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약하고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민간보험소득, 퇴직금, 복권당첨금과 같은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9b).

그러나 1998년도의 자료는 가구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급여,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 1999년도의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이전소득 항목의 경우, 생활비, 교육비 등 의 명목으로 친척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보조금(한국노동연구원, 1998a)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원자료 구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소득원의 유형을 연도별·영역별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가구 소득원의 유형

대표 유형	소득원 유형	1998년	1999년
근로(work)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시장(market)	자산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민간보험, 퇴직금 등)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민간보험, 퇴직금 등)
국가(state)	공적 이전소득	사회보험 (정부보조금)	사회보험 정부보조금
자선(charity)	사회단체보조금	이전소득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가족(family)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4) 빈곤선 측정방법

연구대상가구 중 빈곤가구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선을 결정해야 한다.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ECD와 World Bank에서 제시한 전체소득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1/2(이하 빈곤선1)과 평균소득(mean)의 1/3(이하 빈곤선2)의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기로 한다.⁵⁾ 그러나 상대적 빈곤선의 사용은 가구전체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

5)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실시되면서,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많은 연구들(김미곤, 2000; 김미곤 외, 1999; 박찬용외, 1998)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중소도시 기준액으로 인정된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2만원에서 6인가구 12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은 본 연구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 물론 그 이전의 시기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의미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계측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1974, 1978)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 1994)에 의해 4차례나 수행되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된 수치이고, 정부의 생활보호법 선정기준에도 활용되지 못하였으므로 빈곤선 선정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정부에서 활용한 절대적 빈곤선은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빈곤선은 1인가구 23만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1인 증가할수록 23만원씩 단순 증가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절대적 빈곤선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기로 한다.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정의는 국제기구와 개별국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

구원수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 제시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가구의 기준을 결정하였다.⁶⁾ 또한 소득원 유형별로 빈곤율을 분석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별 소득에 대한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여 설정한 유형별 소득에 대한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상대적 빈곤선

(단위: 만원)

	소득기준	1998년	소득기준	1999년
빈 곤 선 1*	근로소득	31.82 (65.73)	근로소득	30.00 (60.00)
	자산소득 포함	34.06 (67.08)	자산소득 포함	32.54 (65.08)
	사회보험 급여 포함	34.92 (69.12)	사회보험금여 포함	32.54 (65.08)
빈 곤 선 2**	이전소득 포함	35.00 (70.00)	정부보조금 포함	32.54 (65.08)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32.54 (65.08)
			사적이전소득 포함	33.57 (67.15)
빈 곤 선 2**	근로소득	23.45 (71.07)	근로소득	22.50 (68.19)
	자산소득 포함	26.14 (79.21)	자산소득 포함	25.37 (76.89)
	사회보험 급여 포함	26.88 (81.46)	사회보험금여 포함	25.71 (77.93)
	이전소득 포함	27.61 (83.68)	정부보조금 포함	25.80 (78.19)
			사회단체보조금 포함	25.81 (78.21)
			사적이전소득 포함	26.60 (80.62)

비고 : () 안은 각각 중간소득과 평균소득

* 중간소득의 1/2, ** 평균소득의 1/3,

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OECD의 중간소득의 40%, 50%, 60%와 World Bank의 평균소득의 1/2(선진국기준), 1/3(개발도상국기준)이다. 빈곤선 계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미곤(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 6) 빈곤가구의 선정에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빈곤가구로 정의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균등화지수와 관련된 연구들은 김진욱(1996), 안창수 외(1989), 박순일 외(1994)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균등화지수는 2인 가구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만 균등화지수가 제공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OECD에서 제시한 가구균등화지수의 값은 1인 1.000, 2인 1.414, 3인 1.732, 4인 2.000, 5인 2.236, 6인 2.449, 7인 2.646 등이다(김재호·김승택, 2001: 8에서 재인용). 결국 가구·유형별 소득액은 실제소득을 이 균등화지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의 비율과 빈곤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소득을 개별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고,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의 소득을 포함한 누적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파악하여,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1999년도 조사의 일차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개별적으로 포함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파악하여, 공·사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였다.

소득이전의 빈곤이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소득의 변화, 즉 1999년도의 유형별 소득과 1998년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변수화하고, 각 변수들의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1998년도의 비빈곤가구를 1999년도의 비빈곤지속가구(0)와 빈곤진입가구(1)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반대로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분석은 1998년도의 빈곤가구 중 1999년도의 빈곤탈피가구(1)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빈곤진입여부와 빈곤탈피여부이며, 독립변수들은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가구원의 변화수치, 그리고 근로소득의 변화액, 자산소득의 변화액, 사회보험급여의 변화액, 이전소득의 변화액이다.

4. 분석 결과

1) 전체 연구대상가구의 소득원 유형별 소득 구조

연구대상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8년도 조사에는 155.39만 원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152.98만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1999년도 조사의 총소득 규모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⁷⁾ 아래의 <표 4>는 전체 연구대상가구의 실제 연도별 월평균 소득을 소득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1998년도 자료의 총

소득을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가구원이 근로를 대가로 벌어들인 월평균 근로소득이 133.35만원으로 총소득의 85.8%에 이른다. 그리고 가구원이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월평균 자산소득은 14.97만원(총소득의 9.6%)이며,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할 경우, 이전소득 이전의 월평균 일차소득의 규모는 148.32만원(총소득의 95.4%)에 이른다. 총소득 중 월평균 사회보험 급여의 규모는 3.90만원(총소득의 2.5%)이며, 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월평균 이전소득의 규모는 3.17만원(총소득의 2.0%)으로 사회보험 급여의 규모가 이전소득의 규모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사회보험급여를 일시금의 형태로 수급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998년도 자료에서 사회보험금을 수령한 가구의 수는 156가구로 연구대상의 3.5%에 불과하나, 수급자의 월평균 사회보험급여는 108.95원에 이르며, 월 100만원이상 수급가구의 수도 총 수급가구의 48가구(총 수급가구의 30.7%)에 이른다.

1999년도 조사 대상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규모는 130.22만원(총 소득의 85.1%)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절대금액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1998년도 조사보다 조금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1999년도에 조사된 월평균 자산 소득의 규모는 16.73만원(총소득의 10.7%)으로 전년도에 크게 비해 증가하였으며,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의 규모는 146.95만원(총소득의 96.0%)에 이른다. 1999년도의 자료는 이전소득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적소득이전 중 월평균 사회보험급여는 1.88만원(총소득의 1.2%)이고, 월평균 정부 보조금은 0.38만원(총소득의 0.2%)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수혜 가구의 수는 168 가구(총 연구대상가구의 3.8%)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으나, 월평균급여액은 48.84만원에 불과하여 평균 급여액의 수는 크게 축소하였으며, 월 100만원 이상 수급가구의 수도 31가구(총 수급가구의 18.4%)로 축소하였다. 생활보호 생계비, 경로우대 교통비, 경로연금, 홍수피해 보상금, 장애인 보조 등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가구의 수는 총 498가구(총 연구대상가구의 11.4%)이나, 월평균 수혜액은 3.38만원이며, 수급대상가구의 약 60.2%가 월 1만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7) 1999년도 노동패널자료의 소득은 1998년의 소득에 기초하여 조사·측정된 것이므로, IMF 경제위기가 연구대상가구의 총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적소득이전 중 월평균 사회단체보조금의 규모는 0.02만원(총소득의 0.01%)으로 무시할 만큼 적은 수준이고,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3.76만원(총소득의 2.4%)으로, 월평균 총소득에서 사적소득이전이 차지하는 비율(2.4%)이 공적소득이전의 그것(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적소득이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가구의 수는 14가구(총 연구대상가구의 0.3%; 평균 8.07만원)에 불과하나, 연구대상가구 중 606가구(총 연구대상가구의 13.9%)가 친척이나 친지로부터 월평균 27.04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월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가구도 26가구(총 지원받은 가구의 4.2%)명에 이른다. 연구대상의 가구 총소득과 소득원 유형별 소득의 구성에 대한 분석의 결과, 연구대상 가구들은 총소득의 85.0% 이상을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의 규모는 1998년도 조사의 14.9%과 1999년도 조사의 16.7%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가구의 국가복지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과 가족과 친지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표 4) 소득원 유형별 소득구조

(단위: 만원; %)

연도	소득구분	평균	일차소득	공적이전소득포함	총소득
1998년	근로소득	133.35 (85.81)			
	자산소득	14.97 (9.63)	148.32	152.22	155.39
	금융소득	3.72 (2.39)	(95.45)	(97.95)	(100.00)
	부동산소득	3.28 (4.68)			
	기타소득	7.97 (5.12)			
	사회보험급여	3.90 (2.50)			
1999년	이전소득*	3.17 (2.04)			
	근로소득	130.22 (85.12)			
	자산소득	16.73 (10.76)	146.95	149.22	152.98
	금융소득	3.42 (2.20)	(96.05)	(97.54)	(100.00)
	부동산소득	3.48 (2.23)			
	기타소득	9.82 (6.31)			
	공적이전소득	2.27 (1.46)			
	사회보험급여	1.88 (1.20)			
	정부보조금	0.38 (0.24)			
	사회단체보조금	0.02 (0.01)			
	사적이전소득	3.76 (2.41)			

비고: ()는 총소득에 대한 비율

* 1998년도의 이전소득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2) 빈곤율과 빈곤가구의 특성

아래의 〈표 5〉는 빈곤선1과 빈곤선2에 기초한 연구대상가구의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선1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비율은 1998년도 자료의 경우 20.8%이고, 1999년도에 조사된 자료에는 20.9%로 나타나 1998년도에 비해 0.1%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빈곤선2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1998년도 조사에는 15.3%로 나타났고, 1999년도에는 16.1%로 조사되어 빈곤가구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소득에서 공·사소득이전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차소득만으로 빈곤가구의 비율을 측정하면, 빈곤가구의 수는 더욱 증가한다. 연구대상가구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빈곤선1을 기준으로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각각 22.6%와 24.0%로 조사되었고, 이를 빈곤선2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각각 18.5%와 20.0%로 조사되었다.⁸⁾ 경제위기 기간동안 조사된 1999년도 자료의 빈곤율 증가를 통해, 경제위기 기간동안 가구빈곤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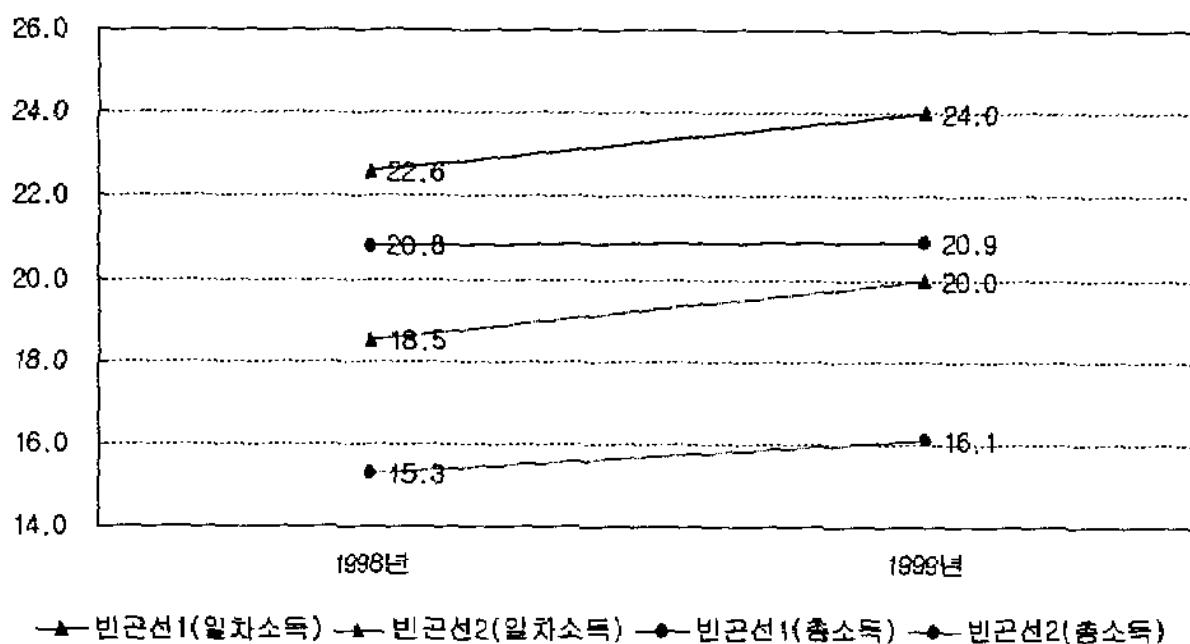
〈표 5〉 연도별 빈곤율

(단위: %; 가구수)

빈곤선 기준	빈곤선1		빈곤선2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일차소득 기준	22.6 (986)	24.0 (1,045)	18.5 (808)	20.0 (870)
총소득 기준	20.8 (909)	20.9 (911)	15.3 (667)	16.1 (703)

8) 빈곤가구의 비율과 관련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빈곤율이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이는 조사 대상자 중 비근로자의 소득이 다른 자료에 비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방하남 외, 1999).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구인희(2001)는 노동패널에 보고된 가구총소득에 25%를 가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자료에 대한 조작은, 분석의 결과를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아니다.

〈그림 1〉 연도별 빈곤율의 변화



빈곤선1을 기준으로 측정된 빈곤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1998년도에 조사된 빈곤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구성은 비빈곤가구주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1999년도에 조사된 빈곤가구주의 특성은 1998년도와 1999년도 자료의 비빈곤가구주에 비해 여성, 노령, 저학력 가구주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도에 조사된 빈곤가구주의 28.2%는 여성이고, 45.9%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49.4%의 가구주가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 현상을 보임으로서, 1998년도에 조사된 여성가구주(14.0%), 노인가구주(18.8%), 저학력 가구주(23.3%)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동안 여성, 고령, 저학력 가구주의 빈곤가구 편입이 보다 크게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빈곤선2의 기준에 의해 측정된 빈곤가구의 특성은 〈부록표 1〉에 첨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6) 빈곤가구주의 특성(빈곤선1 기준)

(단위: 명: %)

연도	1998년		1999년		
	변수 / 구분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가구주 성					
남성	2,945 (85.4)	782 (86.0)	3,073 (89.2)	654 (71.8)	
여성	502 (14.6)	127 (14.0)	372 (10.8)	257 (28.2)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164 (4.8)	46 (5.1)	189 (5.5)	21 (2.3)	
30-40세	885 (25.7)	249 (27.4)	1,002 (29.1)	132 (14.5)	
40-50세	965 (28.0)	259 (28.5)	1,051 (30.5)	173 (19.0)	
50-60세	723 (21.0)	184 (20.2)	740 (21.5)	167 (18.3)	
60세 이상	710 (20.6)	171 (18.8)	463 (13.4)	418 (45.9)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869 (22.8)	212 (23.3)	546 (15.8)	450 (49.4)	
중졸	591 (15.5)	139 (15.3)	524 (15.2)	155 (17.0)	
고졸	1,416 (37.2)	356 (39.2)	1,420 (40.9)	214 (23.5)	
전문대졸	207 (5.4)	37 (4.1)	203 (5.9)	25 (2.7)	
대학 이상	727 (19.1)	165 (18.2)	762 (22.1)	67 (7.4)	
합계	3,447	909	3,445	911	

1998년도에 빈곤선1을 기초로 측정된 빈곤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규모는 30.21만원이다. 이를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월평균 근로소득이 21.32만원(총소득의 70.5%)으로 그 규모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빈곤가구의 근로소득(162.89만원; 86.4%)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주요 원인이 가구원의 실업이나 저임금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909개 빈곤가구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가지는 가구의 수는 438 가구로 전체 빈곤가구의 48.1%에 불과하여 빈곤가구의 실업률은 50.0%를 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을 가지는 빈곤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4.25만원(평균 가구

원수 3.53명; 가구원당 12.53만원)에 불과하여, 빈곤근로가구(working poor)의 저임금 수준이 빈곤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가구의 자산소득은 2.50만원으로 총 소득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급여가 0.34만원으로 총소득의 1.1%에 이른다. 빈곤가구 중 사회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수는 전체빈곤가구의 1.6%인 15가구에 불과하며, 월평균 급여액은 20.99만원(가구원당 5.94만원)으로, 비빈곤가구 중 사회보험 급여를 제공받은 141가구(전체 비빈곤가구의 4.0%)의 월평균 118.25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가구 중 사회보험 수혜자의 수가 많지 않고 급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이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기여와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수준이 매우 낮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가구는 월평균 총소득의 약 19.9%정도를 이전소득(평균 6.04만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성은 비빈곤가구의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1.2%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이다. 결국 빈곤가구는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한 총소득의 부족분을 친지나 친구의 도움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98년도 자료의 빈곤가구 중 이전소득이 존재하는 가구는 전체 빈곤가구의 32.1%인 292가구이고, 월평균 이전소득의 규모는 18.80만원(가구원당 5.32만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빈곤가구 중 이전소득이 존재한 가구는 전체 비빈곤가구의 6.1%인 213가구에 불과하나, 월평균 이전소득의 규모는 38.99만원에 달한다.

1999년도에 조사된 빈곤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규모는 28.16만원으로 1998년도 조사에 비해 1.96만원 감소하였다. 총소득에 대한 개별구분 소득의 비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65.6%), 자산소득(7.6%), 사회보험급여(0.4%), 이전소득(25.0%)의 비중이 199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근로소득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 빈곤가구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가지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빈곤가구 911가구 중 448가구(빈곤가구의 고용률: 49.1%)에 이르며,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의 규모는 37.61만원(평균 가구원수 3.67명; 평균 가구원당 10.24만원)이다. 이는 실업과 저임금이 가구 반贫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1998년도의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999년도의 자료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는 1.66만원(총소득의 5.53%)이며,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5.92만원(총소득의

21.0%)으로 사적이전소득의 규모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가구 중 불과 20가구(빈곤가구의 2.1%)가 평균 20.31만원(가구원당 5.53만원)의 사회보험급여를 제공받았으며, 이는 사회보험급여를 받은 비빈곤가구(148가구; 비빈곤가구의 4.2%)의 평균 52.70만원의 급여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또한 빈곤가구 중 254가구(빈곤가구의 27.8%)가 월평균 4.05만원(가구원당 1.1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제공받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부조급여의 수혜가구가 전체 빈곤가구의 불과 27.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부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외에 재산기준이나, 부양자의무기준, 토지소유기준, 주거면적기준, 자동차소유기준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부조급여가 실질적인 빈곤정책으로 그 실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에 대한 이러한 조건들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모든 (빈곤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빈곤)가구를 수급권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빈곤가구 중 사적이전이 발생한 가구 수는 총 빈곤가구의 32.1%인 293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18.42만원에 이른다. 반면에 비빈곤가구 중 사적이전을 이전 받은 가구 수는 총 비빈곤가구의 9.0%인 313가구에 불과하나, 이들의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의 양은 35.11만원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9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기초한 빈곤가구 총소득의 소득원별 비중은 개인(근로) : 시장 : 국가 : 가족의 역할이 6.6 : 0.8 : 0.5 : 2.1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의 규모가 총소득의 약 6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실업이나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가 빈곤의 주된 원인이며,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사적이전소득의 수준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빈곤선1에 기초한 비빈곤가구와 빈곤가구의 소득원 유형별 소득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참고로 빈곤선2에 기초한 비빈곤가구와 빈곤가구의 소득원 유형별 소득구조의 비교는 <부록표 2>에 첨부하였다.

〈표 7〉 빈곤가구의 소득원 유형별 소득구조(빈곤선1 기준)

(단위: 만원; %)

연도	1998년		1999년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근로소득	162.89 (86.45)	21.32 (70.57)	159.77 (85.90)	18.50 (65.69)
자산소득	18.26 (9.69)	2.50 (8.27)	20.58 (11.06)	2.16 (7.67)
사회보험급여	4.83 (2.56)	0.34 (1.12)	2.26 (1.21)	0.44 (1.56)
정부보조금			0.19 (0.10)	1.12 (3.97)
사회단체보조금	2.41 (1.27)	6.04 (19.99)	0.01 (0.00)	0.01 (0.03)
사적이전소득			3.19 (1.71)	5.92 (21.02)
총소득	188.40	30.21	185.99	28.16

3)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본 절에서는 구분된 개별 소득원의 누적소득의 결과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측정함으로써 소득이전이 가지는 빈곤완화의 효과를 살펴본다. 〈표 8〉에 의하면, 빈곤선1과 가구 근로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은 1998년도와 1999년도 조사에 각각 24.8%(1,081가구)와 25.3%(1,101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측정해 보면, 1998년도 조사에는 22.6%(986가구)로, 1999년도 조사에는 24.0%(1,045가구)로 빈곤가구의 비율이 감소한다.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측정된 빈곤가구 중 자산소득을 포함할 경우, 빈곤가구의 수가 1998년도의 조사에는 95가구(빈곤가구의 8.7%), 1999년도의 조사에는 56가구(빈곤가구의 5.0%)가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동안 자산소득의 감소로 빈곤완화효과가 그 이전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할 경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분포가 상향편기되므로 빈곤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는 빈곤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빈곤선2의 경우 자산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0.1%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 일차소득에 사회보험급여액을 포함할 경우, 빈곤가구의 수는 더욱 감소하게 되는

데 빈곤율 감소의 수치는 그리 크지 않다. 상대적 빈곤가구의 수가 1998년도 조사에는 13가구(빈곤가구의 1.3%), 1999년도 조사에는 29가구(빈곤가구의 2.7%)가 축소하여, 빈곤율이 22.3%와 23.3%로 감소한다. 그러나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실제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사회보험급여의 실질적인 빈곤완화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 중 실제로 1998년도 조사에 사회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가구의 수는 60가구(빈곤가구의 6.0%)에 불과하나, 이 중 41가구(수급가구의 68.3%)가 빈곤상태에서 탈피했으며, 19가구(31.7%)가 빈곤상태에 잔류하여, 급여대상자의 빈곤탈피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9년도에 조사된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 중 실제로 사회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가구의 수는 50가구로 빈곤가구의 4.5%에 불과하나, 실제 사회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가구 중 빈곤에서 탈피한 가구의 수는 29가구에 이르러 수급대상가구의 58.0%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 중 사회보험의 급여의 수급대상자의 비중은 극히 미비하여 전체적인 빈곤완화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 수급대상자로 파악되어 급여의 권리를 보장받으면 사회보험급여가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보험제도의 문제는 급여의 수준보다는 급여대상자 혹은 사회보험적용대상자 확대의 문제인 것이다. 한편, 분석의 결과는 정부의 공적부조제도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도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차소득과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1,006가구) 중 1999년도 조사에 실제로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가구의 수는 284가구로 빈곤가구의 28.2%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빈곤가구에서 벗어난 가구 수는 정부보조금 수급가구의 3.5%인 10가구(빈곤가구의 0.9%)에 불과해, 빈곤가구 중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은 대상가구의 절대적인 수도 낮지만, 정부보조금의 급여수준도 매우 낮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를 통해 급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급여의 수준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보조금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급여를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다면 이는 정부가 소득이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기는 어렵다.

한편, 1998년도 자료의 일차소득과 사회보험급여를 누적한 소득에 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빈곤가구의 수가 64가구(빈곤가구의 6.5%) 축소하게 되어 최종 빈곤율은

20.8%(909가구)가 된다. 실제로 이전소득이 발생한 가구의 수는 전체 빈곤가구의 40.1%인 391가구에 이르며, 수급가구의 25.3%인 99가구가 이전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에서 탈피하였다. 1999년도 자료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빈곤율의 감소효과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빈곤가구의 수는 95가구(빈곤가구의 9.4%)가 축소하게 되어 빈곤율은 20.9%(911가구)로 크게 감소한다. 전체 빈곤가구 중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 가구의 수는 402가구(빈곤가구의 40.0%)에 이르며, 이 중 27.1%인 109가구가 빈곤상태에서 탈피하였다.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비교해 보면, 1999년도에 조사된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가 1998년도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일차소득에 기초한 빈곤율은 각각 20.6%와 24.0%로 1999년의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이 발생한 후 빈곤가구의 비율은 각각 20.8%와 20.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동안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3.1% 포인트)가 그이전의 시기(1.8% 포인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위기기간동안 일차소득에 기초한 가구 빈곤율은 증가하였지만, 빈곤가구의 공·사소득이전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전소득에 의해 빈곤가구에서 탈피한 가구의 수는 이전의 시기보다 증가하였다.

빈곤선2를 기초로 하여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보면, 빈곤선1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8년도 자료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18.5%이고, 여기에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할 경우 빈곤율은 18.1%로 감소하며, 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빈곤율은 15.3%로 감소한다. 1999년도 조사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20.0%이나, 여기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빈곤율은 각각 19.4%와 16.1%로 감소한다.

(표 8)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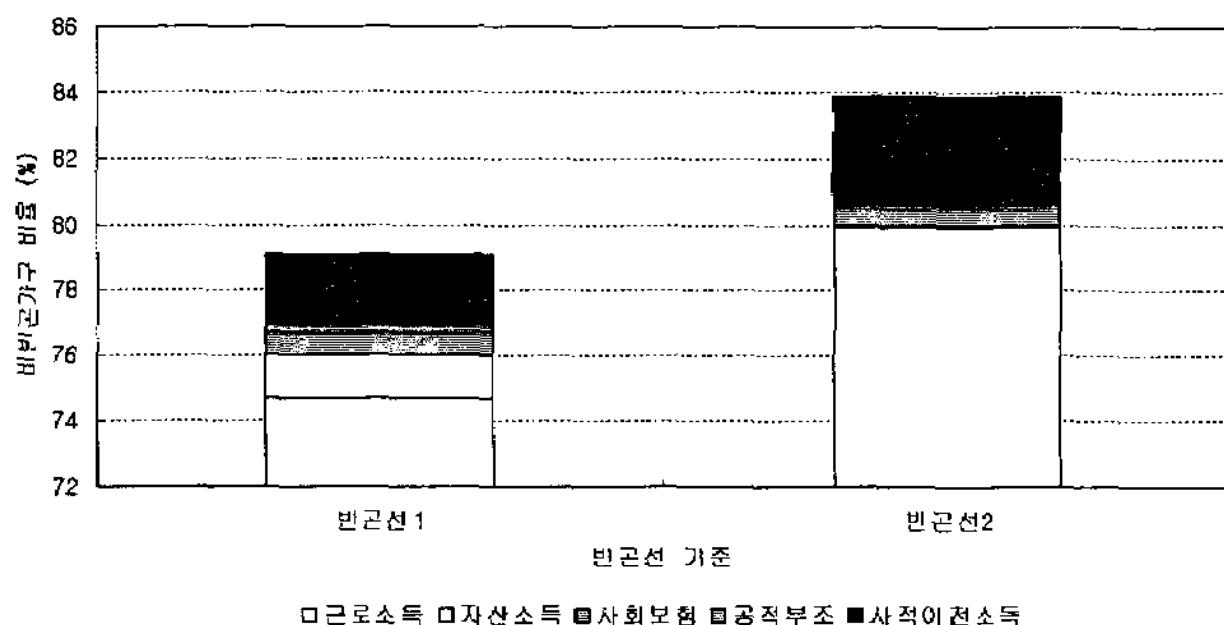
(단위: %; 가구수)

구분소득		누적소득	빈곤선1		빈곤선2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근로	근로	근로소득	24.8 (1,081)	25.3 (1,101)	20.2 (881)	20.1 (877)
자산	자산	자산소득	22.6 (986)	24.0 (1,045)	18.5 (808)	20.0 (870)
사회보험	공적이전	사회보험금	22.3 (973)	23.3 (1,016)	18.1 (787)	19.5 (848)
이전소득	사적이전	정부보조금		23.1 (1,006)		19.4 (843)
		사보조금	20.8 (909)	23.0 (1,004)	15.3 (667)	19.3 (842)
		사적이전		20.9 (911)		16.1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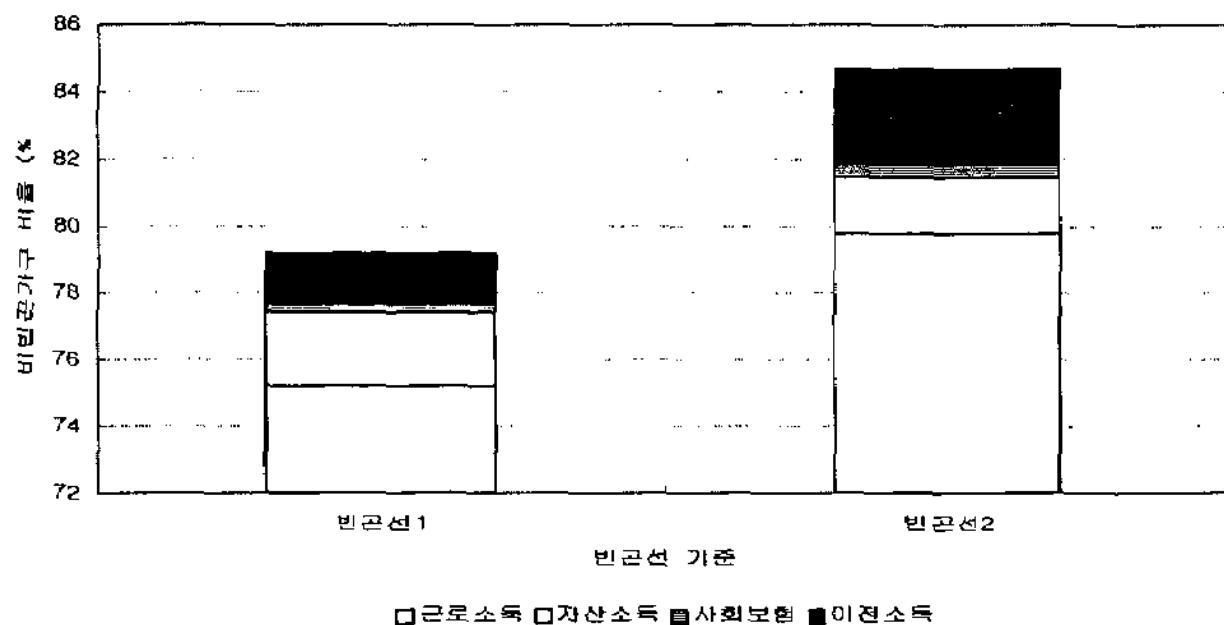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은 위에서 설명한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1999년도 조사에서 개별소득이 누적됨에 따라 비빈곤가구의 비율⁹⁾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빈곤선1을 기준으로 일차소득만으로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76.0%(빈곤율 24.0%)이다. 여기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76.9%(빈곤율 23.1%)로 증가하며, 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79.1%(빈곤율 20.9%)로 증가한다. 즉, 유형별 개별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공적이전소득(0.9% 포인트)에 비해 사적이전소득(2.2% 포인트)의 빈곤완화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한 일차소득의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80.0%이나, 여기에 공적소득이전을 포함할 경우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80.6%로 증가하며,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83.9%로 증가하여,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3.2% 포인트)가 공적이전소득의 그것(0.6% 포인트)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3>의 1998년도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면, 이전소득(1.5% 포인트)의 효과가 사회보험급여(0.3% 포인트)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본 연구의 결과로는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논리의 보다 명확한 전개를 위해 그림에는 비빈곤 가구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그림 2〉 1999년도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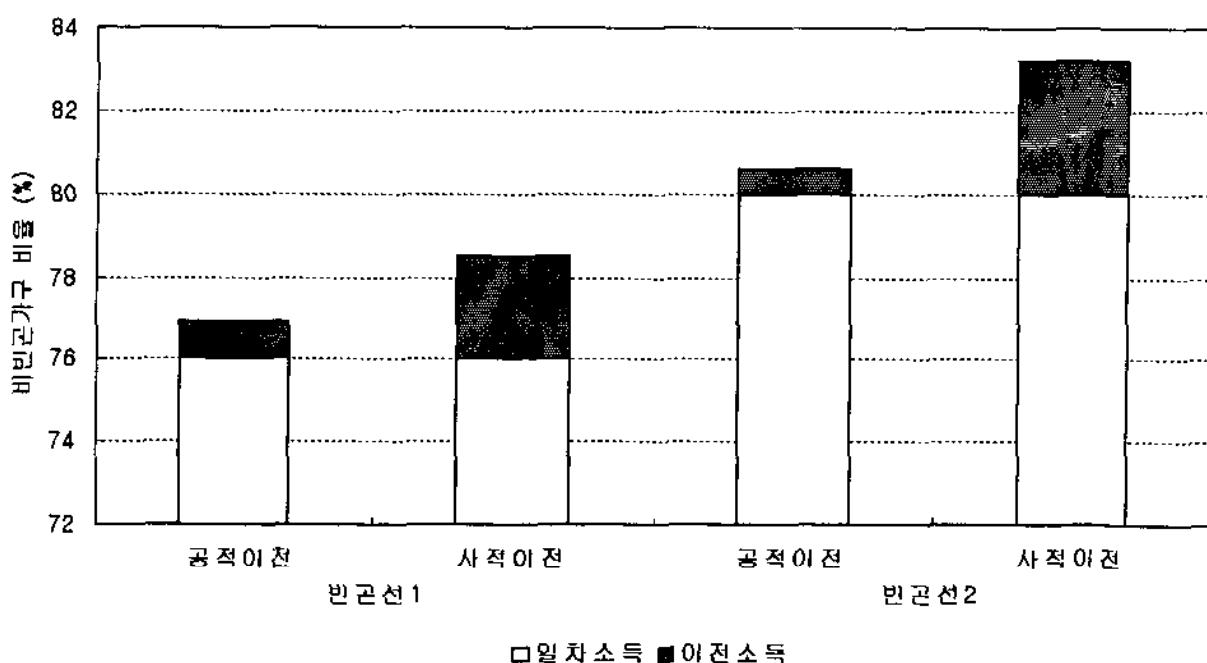
〈그림 3〉 1998년도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비교는 가구의 일차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개별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보다 분명해 질 수 있다. 〈그림 4〉는 1999년도에 조사된 일차소득에 공·사이전소득을 개별적으

로 포함하여 각각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빈곤선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차소득의 비빈곤가구 비율은 76.0%(빈곤율 24.0%)이다. 여기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76.9%(빈곤율 23.1%)로 0.9% 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으나,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78.5%(빈곤율 21.5%)로 2.5% 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반복되는데, 일차소득의 비빈곤가구 비율 80.0%(빈곤율 20.0%)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80.6%(빈곤율 19.4%)로 0.6% 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비빈곤가구의 비율은 83.2%(빈곤율 16.8%)로 3.2% 포인트나 증가한다. 결국, 공·사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비교해보면, 사적소득이전의 효과가 공적소득이전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1999년도 공·사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비교



4) 소득이전의 빈곤이행 효과

본 절에서는 빈곤가구여부에 대한 동태적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소득이전의 빈

곤이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9〉에 의하면, 연구대상가구 중 1998년도에 조사된 비빈곤가구는 빈곤선1을 기준으로 총 3,447가구였으나, 1999년도의 조사에는 그 중 21.5%인 743가구가 새롭게 빈곤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규모는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할 경우 조금 감소하게 되는데, 1998년도 조사에 비빈곤가구였던 3,689가구의 16.4%인 604가구가 1999년 조사에 새롭게 빈곤가구에 편입되었다. 한편, 1998년도에 빈곤선1을 기준으로 조사된 909개 빈곤가구 중 741가구가 1999년도 조사에서 빈곤탈출을 경험하였다. 이는 1998년도에 조사된 총 빈곤가구의 81.5%에 이르는 놀라운 수치이다. 이를 빈곤선2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면, 1998년도에 조사된 총 667개 빈곤가구의 무려 85.1%에 이르는 568가구가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였다. 결국 2년 연속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구의 수는 각각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168가구(전체가구의 3.9%)와 99가구(2.3%)에 불과하며, 이러한 연구대상의 빈곤진입과 탈출의 이행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표 9〉 빈곤이행의 형태와 실태

(단위: 가구수: %)

구분	상태변화		빈곤선 기준	
	1998년	1999년	빈곤선1	빈곤선2
비빈곤지속	비빈곤	⇒ 비빈곤	2,704 (62.1)	3,085 (70.8)
빈곤진입	비빈곤	⇒ 빈곤	743 (17.1)	604 (13.9)
빈곤탈출	빈곤	⇒ 비빈곤	741 (17.0)	568 (13.0)
빈곤지속	빈곤	⇒ 빈곤	168 (3.9)	99 (2.3)

〈표 10〉의 빈곤이행 형태별 가구의 특성(빈곤선1 기준) 중 빈곤진입가구주와 빈곤지속가구주의 특성은 1999년도에 조사된 빈곤가구주의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가구주의 특성 중 여성(27.3%: 32.1%), 고령(45.6%: 47.0%), 그리고 저학력(48.6%: 53.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에 새롭게

진입한 가구주보다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가구주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록 2년에 걸친 짧은 기간의 연구결과이지만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저학력 가구주 일수록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빈곤정책의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한편, 새롭게 빈곤상태에서 탈출한 가구주의 특성을 보면, 남성가구주의 비중(90.1%)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별로는 30대(30.2%)와 40대 가구주(29.8%)의 비중이 높으며, 교육수준 정도는 고졸 가구주(43.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빈곤지속가구의 그것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특성을 가진 가구주들의 새로운 직장에의 고용이 용이했음을 의미한다. 빈곤선2에 기초한 빈곤이행 형태별 가구 주의 특성은 <부록표 3>에 첨부하였는데, 분석의 결과는 <표 10>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빈곤선1을 기준으로 빈곤이행 형태별로 유형별 소득의 변화추이를 보면, 우선 비빈곤 지속가구는 월평균 자산소득과 월평균 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근로 소득과 월평균 사회보험급여가 감소하여, 월평균 총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1.77 만원 감소하였다. 그리고 <표 11>에 의하면, 빈곤 지속가구의 월평균 소득변화도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의 축소분이 145.37만원으로, 총소득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가구원의 실업과 저임금이 새로운 빈곤가구로의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이다. 동시에 자산소득과 사회보험급여액도 감소하였으나, 월평균 이전소득(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적이전소득)은 5.12만원 증가하였다. 한편, 새롭게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41.66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132.99만원의 근로소득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빈곤탈출가구는 더 이상 친지에 의한 사적소득의 이전이 필요 없어서인지 월평균 이전소득의 규모가 3.26만원 축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기간동안 가구주의 고용과 실업상태의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빈곤가구로의 진입이나 탈출과 같은 빈곤이행의 정도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빈곤이행 형태별 가구주의 특성(빈곤선1 기준)

(단위: 명; %)

변수명 / 구분	비빈곤지속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지속
가구주 성				
남성	2,405 (88.9)	540 (72.7)	668 (90.1)	114 (67.9)
여성	229 (11.1)	203 (27.3)	73 (9.9)	54 (32.1)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145 (5.4)	19 (2.6)	44 (5.9)	2 (1.2)
30-40세	778 (28.8)	107 (14.4)	224 (30.2)	25 (14.9)
40-50세	830 (30.7)	135 (18.2)	221 (29.8)	38 (22.6)
50-60세	580 (21.4)	143 (19.2)	160 (21.6)	24 (14.3)
60세 이상	371 (13.7)	339 (45.6)	92 (12.4)	79 (47.0)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423 (15.6)	361 (48.6)	123 (16.6)	89 (53.0)
중졸	415 (15.3)	125 (16.8)	109 (14.7)	30 (17.9)
고졸	1,088 (40.2)	180 (24.2)	322 (43.5)	34 (20.2)
전문대졸	171 (6.3)	20 (2.7)	32 (4.3)	5 (3.0)
대학 이상	607 (22.4)	57 (7.7)	155 (20.9)	10 (6.0)
합계	2,704	743	741	168

(표 11) 빈곤이행의 형태와 소득원 유형별 소득구조의 변화(빈곤선1 기준)

(단위: 만원; 명)

구분	상태변화		소득 구성별 변화					가구원수 변화
	1998년	1999년	근로	자산	사회보험	이전소득	총소득	
비빈곤지속	비빈곤 ⇒ 비빈곤		-1.48 (-0.78)	4.43 (3.89)	-2.29 (-2.57)	1.13 (1.24)	1.77 (1.77)	0.14 (0.13)
빈곤진입	비빈곤 ⇒ 빈곤		-145.37 (-146.74)	-16.64 (-18.64)	-4.56 (-2.66)	5.12 (4.13)	-161.56 (-164.04)	-0.50 (-0.52)
빈곤탈출	빈곤 ⇒ 비빈곤		132.99 (135.58)	10.87 (12.25)	1.08 (1.26)	-3.26 (-2.94)	141.66 (146.15)	0.57 (0.60)
빈곤지속	빈곤 ⇒ 빈곤		-0.78 (4.47)	-0.30 (-1.02)	0.15 (0.45)	-0.39 (-2.78)	-1.46 (1.12)	0.36 (0.30)

비고: ()은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

〈표 12〉는 비빈곤상태에서 빈곤가구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와 빈곤상태에서 탈퇴한 가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이전의 빈곤이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새롭게 빈곤가구로 진입한 가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변수와 가구원수의 변화(+), 그리고 근로소득의 변화(-), 자산소득의 변화(-), 이전소득의 변화(-) 변수가 빈곤선1과 빈곤선2을 기준으로 한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수록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전소득의 효과와는 달리 공적소득이전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급여의 변화는 빈곤진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성(-)이 추가적으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보이는데, 이는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빈곤가구에서 탈출한 가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가구원수의 변화(-), 근로소득의 변화(+), 자산소득의 변화(+), 사회보험급여액의 변화(+), 그리고 이전소득의 변화(+) 변수가 빈곤선1과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구원수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급여, 그리고 이전소득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이 용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보험급여의 감소는 빈곤가구로의 진입에 아무런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보험급여액이 증가할수록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빈곤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⁰⁾ 빈곤선2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성(+)과 연령(-)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여성가구주에 비해 남성가구주가,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탈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0) 그러나 1998년도 자료의 정부보조금 항목이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구성상의 한 계로, 빈곤이행에 대한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표 12) 소득이전의 빈곤이행 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빈곤선	빈곤선1		빈곤선2	
	빈곤진입요인	빈곤탈출요인	빈곤진입요인	빈곤탈출요인
가구주 성 (남성)	-0.242 (0.131)	0.273 (0.409)	-0.293 (0.135)	1.240 (0.564)
가구주 연령	0.032 (0.004)	-0.024 (0.014)	0.034 (0.004)	-0.062 (0.022)
가구주 교육수준	-0.117 (0.013)	0.056 (0.043)	-0.097 (0.013)	-0.122 (0.057)
가구원 수의 변화	0.066 (0.028)	-0.824 (0.116)	0.064 (0.029)	-0.753 (0.157)
근로소득의 변화	-0.007 (0.001)	0.088 (0.008)	-0.006 (0.001)	0.113 (0.014)
자산소득의 변화	-0.001 (0.001)	0.070 (0.012)	-0.001 (0.001)	0.123 (0.021)
사회보험료 변화	-0.001 (0.001)	0.095 (0.023)	-0.001 (0.001)	0.089 (0.032)
이전소득의 변화	-0.012 (0.003)	0.076 (0.012)	-0.011 (0.002)	0.104 (0.018)
상수	-2.105 (0.316)	-1.184 (1.068)	-2.273 (0.332)	1.197 (1.485)
-2 Log Likelihood	2,691.447	241.888	2,530.063	122.404
가구원 수	3.447	909	3,689	667

비고: * p < 0.05, ** p < 0.01, *** p < 0.001

5. 결론 및 제언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와 빈곤이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시할 수 있는 빈곤정책에 대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연구대상가구의 총소득을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포함하는 일차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전소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전이전소득의 비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연구대상가구의 약 20.0%에 이르는 빈곤층의 경우,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빈곤가구의 근로소득은 비빈곤가구에 비해 매우 낮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들은 실업이나 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감소분을 특별한 반대급부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

체 빈곤가구 중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근로빈곤가구 (working poor)의 비중이 전체 빈곤가구의 44.8%(1998년)에서 49.1%(1999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가구의 저임금이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에 최저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함과 동시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유보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조속하게 도입·실시하여 근로하는 빈곤층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빈곤가구의 대부분은 일차소득의 수준이 감소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보험급여나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험급여는 일단 수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급여를 제공받을 경우, 대부분의 가구가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급여 대상가구의 비율이 불과 6.0%(1998년)과 4.5%(1999년)에 불과해 전체적인 빈곤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보조금의 경우, 수혜 대상가구의 수는 사회보험급여에 비해 훨씬 많지만 빈곤가구의 28.2%에 불과하며,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회보험의 빈곤완화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자격기준과 급여기간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율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상의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의 경우,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급여수준의 향상이 함께 요구된다. 한편 사적소득이전의 규모는 공적소득이전에 비해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빈곤완화효과도 공적소득이전의 효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대상가구의 빈곤이행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IMF 경제 위기 기간동안,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의 정도가 매우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빈곤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빈곤탈출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전년도 빈곤가구의 81.5%에 이른다는 것은 빈곤가구의 지속성이나 의존성 (dependency)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전소득의 빈곤이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결과,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있어 가구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보험급여의 빈곤이행 효과는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에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보험급여의 감소는 빈곤진입에 아무런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보험급여의 증가는 빈곤탈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빈곤탈출과정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의 변화가 빈곤이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고용연계형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김재호·김승호, 2001). 그러나 고용연계형 빈곤정책이 단지 빈곤가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며, 빈곤층의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빈곤층의 고용이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기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부조제도의 급여 수준을 확대하여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빠른 시일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내실있는 자활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령, 저학력 빈곤층이 빈곤의 지속성을 가진다는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보다 우선적인 정책적 접근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구인희. 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문》,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미곤. 2000. "1999년 빈곤선 계측방식과 수준", 《보건복지포럼》, 제41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7.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강민.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균·조병은·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욱. 1996. "가계의 소비지출 비교: 가계 특성에 의거한 균등화 지수를 중심으로", 《한국 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국제경제학회.
- 박순일. 2000.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 《보건복지포럼》, 제41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순일·최현수·강성호. 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대책》,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순일·김미곤·이수연·정희태·이경신·하길웅.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김진욱. 2001. "경제위기 전후 가구주 특성별 빈곤수준 변화계측",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하남·안주엽·장지연·박은영·호정화·정혜원. 1999.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백은광. 2000. 《공·사적 소득이전이 빈곤층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재은. 2000.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서울: 한국사

회복지학회.

- _____. 1998a. “가족간 소득이전의 경제적 계층별 분배”, 《사회보장연구》, 제14권,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_____. 1998b.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종범 · 김철희 · 전승훈. 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혜경 · 김진욱. 2001. “한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1992-1998”, 《연세사회복지연구》, 제6-7호,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하윤숙. 1999. 《사적소득이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연구원. 1999a.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1999b.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 Code Book》,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1998.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 Code Book》,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Rein & Turner. 1999.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2.
- Atkinson, Rainwater, &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부 록

〈부록표 1〉 빈곤가구주의 특성(빈곤선2기준)

(단위: 명: %)

연도	1998년		1999년		
	변수 / 구분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가구주 성					
남성	3,152 (85.4)	575 (86.2)	3,233 (88.5)	494 (70.3)	
여성	537 (14.6)	92 (13.8)	420 (11.5)	209 (29.7)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175 (4.7)	35 (5.2)	194 (5.3)	16 (2.3)	
30~40세	953 (25.8)	181 (27.1)	1,033 (28.3)	101 (14.4)	
40~50세	1,024 (27.8)	200 (30.0)	1,102 (30.2)	122 (17.4)	
50~60세	779 (21.1)	128 (19.2)	782 (21.4)	125 (17.8)	
60세 이상	758 (20.5)	123 (18.4)	542 (14.8)	339 (48.2)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847 (23.0)	149 (22.3)	648 (17.7)	348 (49.5)	
중졸	576 (15.6)	103 (15.4)	558 (15.3)	121 (17.2)	
고졸	1,365 (37.0)	259 (38.8)	1,466 (40.1)	158 (22.5)	
전문대졸	200 (5.4)	28 (4.2)	208 (5.7)	20 (2.8)	
대학 이상	701 (19.0)	128 (19.2)	773 (21.2)	56 (8.0)	
합계	3,689	667	3,653	703	

〈부록표 2〉 빈곤가구의 소득원 유형별 소득구조(빈곤선2 기준)

(단위: 만원: %)

연도	1998년		1999년		
	변수 / 구분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근로소득	155.16 (86.35)	12.70 (60.33)	152.93 (85.70)	12.26 (59.08)	
자산소득	17.33 (9.64)	1.97 (9.35)	19.58 (10.97)	1.90 (9.15)	
사회보협급여	4.55 (2.53)	0.27 (1.28)	2.17 (1.21)	0.35 (1.68)	
정부보조금			0.20 (0.11)	1.33 (6.40)	
사회단체보조금	2.63 (1.46)	6.11 (29.02)	0.01 (0.00)	0.10 (0.48)	
사적이전소득			3.54 (1.98)	4.91 (23.66)	
총소득	179.68	21.05	178.43	20.75	

(부록표 3) 빈곤이행 형태별 가구주의 특성(빈곤선2 기준)

(단위: 명; %)

변수명 / 구분	비빈곤지속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지속
가구주 성				
남성	2,722 (88.2)	430 (71.2)	511 (90.0)	64 (64.6)
여성	363 (11.8)	174 (28.8)	57 (10.0)	35 (35.4)
가구주 연령				
30세 미만	161 (5.2)	14 (2.3)	33 (5.8)	2 (2.0)
30-40세	867 (28.1)	86 (14.2)	166 (29.2)	15 (15.2)
40-50세	919 (29.8)	105 (17.4)	183 (32.2)	17 (17.2)
50-60세	672 (21.8)	107 (17.7)	110 (19.4)	18 (18.2)
60세 이상	466 (15.1)	292 (48.3)	76 (13.4)	47 (47.5)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547 (17.7)	300 (49.7)	101 (17.8)	48 (48.5)
중졸	473 (15.3)	103 (17.1)	85 (15.0)	18 (18.2)
고졸	1,229 (39.8)	136 (22.5)	237 (41.7)	22 (22.2)
전문대졸	182 (5.9)	18 (3.0)	26 (4.6)	2 (2.0)
대학 이상	654 (21.2)	47 (7.8)	119 (21.0)	9 (9.1)
합계	3,085	604	568	99

The Effect of Income Transfer on Poverty Rate

Kim, Kyo-Sung

(Senior Lecturer of Social Work, Soong Si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reasing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 Two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 1999) are used for the analysis, and 1/2 of median income and 1/3 of mean income are adopted to measure poverty rate. Although private income transfer contributes more to reduce the rate than the public transfer, the main effect for decreasing poverty rate is forced by the w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number of family members(-), wage(+), property income(+),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the transfer income(+).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developing better human resources among the poor family.